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434
----------	-------

발의연월일 : 2026. 9. 17.

발 의 자 : 김종양 · 서천호 · 이달희
고동진 · 박준태 · 조은희
박덕흠 · 김태호 · 신성범
정동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기한 등의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심의를 지연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입안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대한 심의를 2개월 이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요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법령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에 따라 입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을 심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심의 절차) ① 제4조에 따라 입안권자 또는 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그 결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 요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기준에 따라 입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을 심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대한 절차에 따른다.

제11조제7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29조제3항 전단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 안)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 계획(이하 “도시·군관리계획” 이라 한다)은 해당 도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입안권자”라 한다)가 입안(立案)한다. 다만, 국가계획 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 부장관이 직접 도시·군관리계 획을 입안하거나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관 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 시장 및 군수의 의견을 들 은 후 도시·군관리계획을 입 안할 수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과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 안) ① ----- ----- ----- ----- ----- -----이하----- -----. ----- ----- ----- ----- ----- ----- ----- ----- ----- ----- ----- ----- ----- -----

관련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관할 시장이나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하 “해제대상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개발계획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된 지역(이하 “훼손지”라 한다)의 복구계획 등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구하고자 하는 훼손지의 범위는 해제대상지역 면적[바다·하천·도랑·제방(堤防) 및 도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illegible]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면
적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부터 100분의 20까지에 상당하
는 범위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
조에 따른 중양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
관이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결
정한다.

1. ~ 3. (생략)

⑤ (생략)

⑥ 입안권자 또는 개발사업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대상지역이 속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광역계획권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훼손지가 없는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훼손지의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훼손지의 복구를 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중

양도시 계획위원회

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생략)

제5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②
(생략)

③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환원을 추가로 유예

⑦ (현행과 같음)

제5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 -----

중 앙 도 시

계 획 위 원 회-----

-----중양도시
계획위원회-----

할 수 있다.

2. (생략)

④·⑤ (생략)

제8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 ⑦ (생략)

<신설>

2.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8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의2(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을 위한 심의 절차) ① 제4조에 따라 입안권자 또는 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그 결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

	<u>안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 요청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③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에 따라 입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을 심의하여야 한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대한 절차에 따른다.</u>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 ⑥ (생략)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하거나 제4항에 따라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⑦ ----- ----- ----- ----- ----- -----

협의를 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 ⑪ (생략)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② (생략) ③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익성, 환경훼손 가능성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④·⑤ (생략)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⑧ ~ ⑪ (현행과 같음)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 ----- ----- ----- ④·⑤ (현행과 같음)
---	---